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9조 [작업발판 등]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9조(작업발판 등) · 조문 원문

사업주는 선반 · 롤러기 등 기계 ·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· 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.

그림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에는 법령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조문 대조 2026. 10. 28.